

##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- 371호

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「도로교표준시방서」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. 6. .

국토교통부장관

1. 기준명 : 도로교표준시방서

2. 구 분 : 부분개정

3. 개정목적

- 초음파탐상검사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방사선투과검사와 동등 이상의 품질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실용화되었으나 현행 도로교표준시방서에서는 강교 용접부 비파괴검사 시 일부 구간에 대해 반드시 방사선투과법만을 적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므로, 이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함.
- 원자력안전법의 개정에 따라 방사선투과검사 시 안전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함.

4. 주요 개정내용

구분		주요(개정)내용
제2장 강 교	3.10 용접 검사	- 비파괴검사 방법에서 방사선투과검사 방법과 동등한 수준의 용접 평가 검사 방법인 위상배열(또는 동등 이상의) 초음파탐상검사도 선택할 수 있도록 추가 - 3.10.2 비파괴검사, 3.10.3 비파괴검사의 적용 범위 부분

구분	주요(개정)내용
	에 대해 위상배열(또는 동등 이상의) 초음파탐상검사에 대한 내용 추가 - 3.10.3절에 원자력안전법의 개정에 따른 안전조치 명시

5. 관련단체 : (사)한국도로협회(☎ 02-3490-1000)

6. 도로교표준시방서 부분개정에 따른 경과조치

- 도로교표준시방서 개정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※ 도로교표준시방서 부분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협회(☎ 02-3490-1000)로 문의하여 주시고,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([www.kcsc.re.kr](http://www.kcsc.re.kr))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